

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3년 9월 27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,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사업의 범위 및 관리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특별회계의 설치 등 회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)
-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, 제18조)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고 조례에 사용한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임.
- 현행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10조, 제18조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것임.
- 안 제4조(관리자의 책임), 안 제11조(잉여금의 처분), 안 제17조(자문위원회의 설치 등)에서는 적용 대상 법률, 근거 조항 및 조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임.
- 안 제10조(수입금 마련 지출)은 「지방공기업법」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조 제목을 정비하고, 중복된 조문을 삭제한 것임.
- 안 제15조(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등)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상 공포 대상이 아닌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고시로 정정하고 기존 시보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그 방법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로 분명히 밝힌 것은 업무추진의 명확성 및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것임.

- 이 외에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,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점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